

#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재 결 서

사 건 2019-186호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 결정 취소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재 결 일 자 2020. 2. 17.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9.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0. 15. 피청구인에게 인천광역시 ■■■구 ■■■동 000-00번지 공유재산(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2011년~2103년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사본(단, 개인정보 중 주민등

록번호 및 주소 제외), 2011년~2013년 국유재산 대부계약 내역서, 2015년~2019년 변상금 부과 내역서, 2014년~2018년 대부료 및 변상금 독촉내역서 등(이하 ‘이 사건 정보’ 라 한다)’ 에 대한 공개를 청구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9. 10. 25. 이 사건 정보 중 대부계약서 상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그 외 정보 중 제3자의 성명은 비공개 결정을 하고, 2019. 11. 7.자로 정보부분공개처분(이하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9. 11. 4.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처분’ 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1. 12. 정보공개심의회의를 열어 이 사건 정보 중 제3자의 성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 11. 13.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각처분’ 을 알고, 이에 불복하여 2019. 11.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처분’ 을 하면서 비공개 내용만 통지하고 비공개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이 사건 기각처분을 하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개괄적인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나. 피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제3자는 이 사건 토지의 무허가 건물의 공유자이며 청구인 또한 같은 공유자인데, 2015년 피청구인이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를 공시송달 공고문과 2019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에 의해 청구인이 이미 제3자의 성명을 알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제3자의 성명을 공개하여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

다. 청구인은 해당 무허가 건물의 제3자와 동일한 공유자로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피청구인과 제3자의 대부계약사항 등에 대해 알 권리가 있음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각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

###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비공개 사유의 콤보박스 중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 항목을 선택함으로써 비공개 사유를 적시한 것이고, 개인정보 중 제3자의 성명은 「정보공개법」에서 명시된 공개 제한 사유이다.

나. 2015년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변상금 사전통지 공고문, 변상금 부과 공고문 상에는 제3자를 ●●\*으로 표현하였고, 2019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에는 제3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아 청구인이 이미 제3자의 성명을 알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를 통해 제3자의 성명을 공개하는 것은 제3자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한편 청구인 주장처럼 청구인이 이미 제3자의 성명을 알고 있

다면 이 사건 정보공개를 구할 실익이 없다.

- 다. 대부계약은 행정청인 마치 사인과 같이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제3자의 개인정보인 성명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3자의 비밀을 침해하면서 청구인에게 제3자의 성명을 알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IV. 판 단

### 1. 관계법령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2항

### 2. 이 사건 행정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각처분’ (2019. 11. 12.자 정보 부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심판을 구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이유에서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기각의 하자(이유 미적시, 부분공개 재량권 남용 등)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기각처분’ 만을 행정심판 대상으로 특정하였으나 ‘이 사건 기각처분’의 전제가 된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처분’에 대해서도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선행하여 그 위법여부를 판단한다.

### 3. 이 사건 정보 부분공개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행정절차법」 제23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 처분’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명시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거부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처분’에서 피청구인은 비공개 대상만 적시하고 그 근거와 사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또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처분’에서는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자료 중 일부에 대해서는 그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정보공개법」 제11조에는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를 청구 받았음에도 일부 대부계약서에 대해 10일 이내에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는 「정보공개법」에 반하는 것이다.

#### 나. ‘이 사건 기각처분’의 위법 여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각처분을 하면서 결정한 내용에는 ‘비공개 내용과 비공개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명시

하고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정보 중 제3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부분을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처분’에서 대부계약서 사본 등에 제3자의 성명을 비공개한 것을 사유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위의 적용 법률의 적시로 인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일부 정보(제3자의 성명)에 비공개 사유로 제3자의 사생활비밀인 성명이 정보공개법에 의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처분’에서 일부 누락한 정보에 대해 추가로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각처분에는 근거와 이유가 명시되었고 누락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가 없다.

한편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처분’과 ‘이 사건 기각처분’은 대부계약서 등에 대한 정보 공개, 특히 제3자의 성명의 공개 여부를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고, 비록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처분’과정에서 비공개 정보에 대한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후 절차인 ‘이 사건 기각처분’과정에서 비공개 근거와 사유가 통지되었고, 누락된 정보에 대해서도 추가로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처분’에서의 절차적 하자는 모두 소급하여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

#### 다. ‘이 사건 정보 부분공개처분’ 및 ‘이 사건 기각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되고,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 하에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처분’ 과 ‘이 사건 기각처분’ 에서 청구인의 요구하는 정보 중 제3자의 성명만을 비공개로 하였다. 피청구인이 제3자의 성명을 비공개하여 얻는 이익은 헌법상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상의 권리로 공공기관은 제3자의 이와 같은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처분’ 과 ‘이 사건 기각처분’ 을 통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권리를 추정하면(청구인은 제3자의 성명에 대한 비공개로 인해 자신의 어떤 권리가 침해될지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추정한다.) 공동점유자 상호간의 재산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나 제3자의 토지가 아니고 따라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청구인이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나 기타 물권상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또한 청구인이나 제3자가 변상금을 내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피청구인의 시혜적인 조치에 의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나 제3자의 법상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 수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했을 때 청구인의 이익이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처분’ 나 ‘이 사건 기각처분’ 을 통해 보호되는 제3자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에 대해 일부 비공개를 한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처분’ 과 ‘이 사건 기각처분’ 이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라. 소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처분’ 과 ‘이 사건 기각처분’ 은 피청구인의 재량범위 내

에서 행해진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